

# 영유아 관련 법령 및 교육과정 변천 비교에 따른 시설 변화 요구사항 연구

## A Study on Requirements for Facilities' Changes with the changes in Legislations and Education Curriculum of Infants

정 유 진\*                      오 병 욱\*\*                      정 진 주\*\*\*  
Jung, Eu-Gene              Oh, Byeong-Uk              Jung, Jin-Ju

### Abstract

The policies is always changes according to the changing times, and changes take place in educational facilities welfare policy. Early childhood facilities, is no exception. Recent, increase in the number of kindergarten and kindergarten children according to policy changes of government's active welfare. This change in pattern, policy changes and increased support to know the impact on the community, and this is not just a simply agenda that they need to be recognized social change. In addition, it can be seen changes in relevant laws and educational process according to childhood policy change flow and depending on social change.

In this study, comparative study infants and installation of the facility based on criteria, ensuring standards of early childhood facility site, facilities of evolution of infants care act, act infants, infants of activities safety management. And Standards and facilities that are required to change the direction of the revision is for the purpose of research through changes in kindergarten curriculum to respond the policies flow. Research methods are literature on the various laws and research analysts, leading comparison of different child care and child care policy changes in laws and regulations to review materials are analyzed.

키워드 : 영유아보육법, 영유아교육법,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건축법, 유치원 교육과정

Keywords : Infants care act, Infant education, Kids activities safety management, Building code, Kindergarten curriculum

## 1. 서론

### 1.1 연구의 목적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정책은 늘 변화하며, 이에 발맞춰 교육 시설 복지 정책에도 변화가 일어난다. 영유아시설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 정부의 적극적인 복지 지원 정책 변화에 따라 유치원 개교수와 유치원으로 보내는 원아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 변화양상은 다음과 같다. (Table 1.)

이 변화 양상에서, 정책 변화와 지원 증가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으며, 이를 단순한 안전이 아닌 사회적 변화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영유아 정책 변화 흐름과 사회적 변화 양상에 따라 관련 법령과 교육과정에서도 변화를 볼 수 있는데, 영유아보육법령은 최종적으로 제정된 1991년부터 최근 2013년에 이르기까지 총 27회에 걸쳐 개정되면서 지속적인 변화를 유도해오고 있다.

1997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보육위원회와 관련하여 수차례 개정을 거쳐 왔고, 2011년 6월 7일에 개정된 법안에서는 영유아를 칭하는 정의부터 시작하여 어린이집의 종류 제정까지 개정된 법안을 삽입하였다. 또한, 2011년부터는 보육 이념의 법안을 개정하면서 본격적으로 갖추어진 영유아보육법령이 개시되었으며 가장 최근까지 개정된 2013년 3월 23일자 법안까지 갖추어져 있는 현황이다.

또한 유치원의 교육과정은 1969년 2월 제정된 이후 총 9회에 걸쳐 개정되어왔으며, 2007년 12월 7차 유치원교육과정 이후 2011년 9월부터는 누리과정이라는 명칭 하에

\* 정회원, 청주대 대학원 건축공학과 석사과정

\*\* 정회원, 한국교육개발원 팀장, 건축학박사, 공동저자

\*\*\* 정회원, 청주대 건축학과 부교수, 공학박사, 교신저자  
(jinjuj@cju.ac.kr)

Table 1. Changing patterns a number of kindergarten, child, enrollment (유치원수, 원아 수, 취학률의 변화 양상)

구분	유치원수(개교)	원아 수(명)	취학률(%)
2010	8,388	538,587	40.5
2011	8,424	564,834	40.9
2012	8,538	613,749	44

※ 2013년 통계청 자료

개정되어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변천 중 영유아시설의 기준과 설치 기준, 영유아시설 용지의 확보 기준, 시설 폐쇄 기준 등을 비교 고찰하고, 정책 흐름에 대응하는 유치원 교육과정의 변화를 통해, 그 변화에 요구되는 시설 기준 및 개정 방향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 언급하는 영유아시설의 범위는 영유아보육 법령에 제정되어 있는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이 생활 가능한 시설이며, 유치원, 어린이집의 시설만을 다루고자 한다.

시설관련법령의 고찰범위는, 일반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과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법, 그리고 건축계획법을 대상으로 하며, 모든 법령에 해당하는 실제 대통령령의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을 검토하도록 한다.

또한, 교육과정의 고찰범위는 유치원 교육과정 및 누리과정의 변화양상을 살펴보고 차이점에 대하여 분석한다.

이에 따른 연구 방법은 각종 실제 법령과 교육과정에 대한 문헌 조사 분석 및 연구, 선행된 다른 영유아 보육정책의 비교 및 영유아보육법령의 변화 자료를 검토 분석한다.

## 2. 영유아관련 시설 법령의 변화

### 2.1 영유아보육법

이러한 교육 정책 변화에 따라 교육 관련 법령이 변화하기 시작하였고, 그 법령 내에서 영유아시설에 관한 사항의 다양한 변화가 요구되었다.

영유아에 관련된 최초 법령인 ‘영유아 보육법’은 1991년 1월에 최종 공포된 후 사회 변화에 따라 24회에 걸쳐 개정되고,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은 1991년 8월에 최종 공포되었으며, 이후 25차례 개정되었다.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은 1991년 8월에 최종 공포된 이후 24차례의 개정이 진행되어왔다.

영유아 보육법의 초기 법령 개정은 주로 법령의 정비를

위한 목적으로 개정되었으나, 2004년 3월 사회의 변화에 따라 모든 법령 항목이 여성부장관의 운영 법안으로 크게 개정되었으며, 이후에도 보건복지가족부와, 보건복지부의 운영 하에 시행될 수 있도록 개정되어 왔다. 이러한 개정 안들 사이에 교육의 기초적인 보육 이념 및 영유아의 개념, 어린이집의 종류 개시 등에 관한 개정사항도 있었다.

이러한 영유아 보육법에 따르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시설관련 변천 과정이 나타나며, 시행규칙의 별도 첨부 자료에는 시설의 입지조건, 시설의 규모, 구조 및 설비와 각 실이 갖추어야 할 원칙에 대해 나열하고 있으며, 비상재해 대비시설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11년 12월 8일에 개정된 별도 첨부 자료 내에는 보육시설의 명칭 개정으로 인해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이라 칭하고 있으며, 그에 맞는 상세한 개정 사항이 나열되어 있다.

### 2.2 유아교육법

유아 보육법과 유아 교육법은 명백히 다른 성격을 드러낸다. 영유아 보육법은 영유아, 즉 0세부터 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의 건강한 보육을 목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영유아의 보호 및 교육에 관하여 규정한 법안이며, 유아 교육법은 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유아들의 보육과 교육의 연관성과 관련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이다.

유아 교육법은 유아교육진흥법을 폐지하고 제정된 법안으로써, 2004년 유아교육법으로 제정되었다. 유아 교육법의 개정안에서는 주로 교육과정과 무상교육 대상자, 유치원의 설립 등에 관련된 사항을 개정하여 나열하고 있다.

유아 교육법의 입법취지로는 유아의 교육과, 보호에 대한 체계를 마련하고, 유아의 균형적이고 조화로운 발달을 유도하며, 보호자의 사회 및 경제적 활동을 지원하는 것에 있다. 또한 유아 교육법의 법안 내용에는 유아교육 및 보육에 관한 기본 교육과정을 나열하고 있으며, 무상교육과 저소득층 지원에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유아 교육법은 국가가 유아 교육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직장가 가정의 공존을 위한 지원 정책의 바탕이 되고 있다.

### 2.3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법

보육 정원 50명 이상인 유치원은 반드시 영유아 1명당 2.6㎡ 이상의 규모로 옥외놀이터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유치원 내의 놀이시설은 유치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에 맞는 놀이시설 관련 안전법령 또한 명시된다.

Table 2. Facility field transition process of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영유아 관련 법령의 시설 분야 변천 과정)

법령	개정 시기	법령 명칭	개정 내용	
영유아 보육법	법령	1997.12.13	보육시설의 시설기준	보건복지부령으로 개정
		1999.02.08	보육시설의 종류	보육시설의 종류 개정(민간보육시설의 정의 개정)
			보육시설의 설치	보건복지부령으로 개정
		2004.03.11	보육시설의 설치	여성부령으로 개정
			보육시설의 시설기준	
			시설의 폐쇄	여성부장관 기준 추가 개정
		2004.12.31	보육시설의 폐쇄	여성부령으로 개정
		2005.03.24	전 항목 개정	여성가족부령으로 개정
		2007.07.27	보육시설의 폐쇄	여성가족부령으로 개정
		2008.02.29	보육시설 설치기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개정
	2010.01.18	보육시설 설치기준	보건복지부령으로 개정	
		보육시설의 폐쇄		
	2011.06.07	용어의 정리	법안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 개정(보육시설-어린이집)	
		어린이집의 종류	어린이집의 종류 명칭 개시(보육시설-어린이집)	
	2011.08.04	목적	기초적 목적 제시	
		보육이념	보육이념의 전문 개정	
		어린이집의 종류	명칭의 개정 및 추가 항목 개시(보육시설-어린이집)	
	시행령	1995.05.19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경우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규정
		1998.05.06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기준을 사업장 외의 사업장의 사업주로 개정
		1999.04.24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항목 삭제
2009.03.31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직장보육시설에 관련된 보육수당과 비용의 사항 개정	
2011.12.08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기준 항목 전문 개정(직장어린이집 설치 경우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고용 사업장으로 규정하며 사업장 외의 사업주는 필요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보육수당 지급)	
시행규칙	1996.01.06	보육시설의 시설기준	각 시설의 시설 및 설치 기준을 별첨 자료로 첨부	
	2006.04.13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2011.12.08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유아 교육법	법령	2008.02.29	교육과정 등	교육과정의 범위를 제안(교육인적자원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
		2010.03.24	유치원의 구분	유치원 각호의 구분을 제시(사립유치원 개정)
			유치원의 설립	설립 기준 제시(사립유치원 설립 인가 개정)
			유치원의 병설	병설시설의 설치 기준 제안
		2010.03.24	교육과정 등	교육과정의 범위를 넓게 제시
			유치원의 폐쇄	폐쇄기준 명시
			유치원의 설립	설치 인가 신청의 사항을 추가 개정
2012.03.21	교육과정 등		방과후 과정의 기준과 내용 사항을 추가 개정	
2013.03.23	교육과정 등	교육부장관의 명명으로 개정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법	법령	2008.02.29	정의	법령 내 용어 정리
			놀이시설의 설치	심사 기준 개정
		2008.12.19	목적	정의 개정
			정의	용어의 삭제
		2011.05.30	놀이시설의 설치	심사 기준 개정
			목적	행정 기관의 역할을 제정
		2013.03.23	정의	추가 사항 개정
정의	새로운 정의안 제시			
		놀이시설의 설치	심사 기준 개정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법은 2007년 1월에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6회에 걸쳐 개정되어 왔으며, 어린이 놀이 시설 안전 관리법령에 따르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역시 제 시되어 있지만, 시설에 관련한 개정 사항이 없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 3. 보육시설 및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기준법

#### 3.1 건축법과 건축계획상의 각론 기준

보육시설 및 어린이 놀이터에 관한 건축법은 어린이집 및 그 놀이터의 설치기준법을 말하며, 교육훈련시설의 시설기준과 급식 시설, 설비 기준 등의 법령으로 제한한다.

어린이집 및 그 놀이터의 설치기준은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의 별도 첨부 자료에서 출처하였고, 법규에 따른 시설기준으로는 건축계획 기준에 따라 명시한다.

시설 설치 기준은 시대 분위기에 따른 법령의 변화와는 달리, 2011년 12월에 제정되어 2013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시행되어 오고 있으며, 급식 시설 및 설비 기준 또한 2007

Table 3. Installation standards Nursery and playground and Food service equipment  
(어린이집 및 놀이터의 설치기준과 급식 시설 설비기준)

구분	내 용
입지 조건	- 위험시설로부터 50m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 - 보육수요, 보건, 위생, 급수, 안전, 교통, 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 부지 선정
규모	- 국공립 : 상시 영유아 11명 이상 - 직장 : 상시 영유아 5명 이상 - 법인 및 민간 : 상시 영유아 21명 이상 - 가정 : 상시 영유아 5명 이상 20명 이하 - 부모협동 : 보육 영유아를 둔 보호자 15명 이상의 출자 및 상시 영유아 11명 이상
일반 기준	- 시설면적 : (보육실 포함, 놀이터 면적 제외) : 영유아 1명당 4.29 제곱미터
	- 보육실 : 층수와 관계없이 해당 층 4면의 100분의 80 이상이 지상에 노출되어 있고, 해당 층 주 출입구의 하단이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인 층(이하 '1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 보육실은 거실, 포복실 및 유희실을 포함하여 영유아 1명당 2.64 제곱미터 이상
일반 기준	- 조리실 : 채광이 잘 되는 곳과, 환기시설을 통한 청정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도록 한다.
	- 목욕실 : 난방 설비 필요, 보육실과 같은 층의 인접한 공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 놀이터 : 보육정원 50명 이상인 어린이집은 영유아 1명당 3.5 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옥외놀이터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옥내놀이터를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건물 내의 실외공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울타리나 보호난간을 최소 1.5미터 이상으로 설치하되 놀이기구의 높이 등에 맞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높이로 설치한다.
	- 비상재해 대비시설 : 어린이집이 건물 1층인 경우 : 출구의 규격을 유효 폭 0.75미터 이상 유효높이 1.75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출구의 최하단은 안전한 외부 지표면으로부터 1.2미터 이하하여야 한다. - 어린이 집이 4층과 5층인 경우 : 건물 내에 양방향 대피가 가능한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며, 보육실의 주출입구는 직통계단 또는 비상계단까지의 보행거리가 30미터 이내가 되도록 설치한다.

※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 9조 관련 별첨1, 2013.08.

년 6월에 신설된 이후로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 1) 건축법

Table 3.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 제시한 기준이며, 놀이터 면적을 제외한 전체 시설면적, 보육실, 조리실, 목욕실, 놀이터, 비상재해 대비시설 등의 면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어린이집 일반 설치 기준에서의 보육실과 시설면적은 영유아 1명당의 최소 면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놀이터의 면적 또한 영유아 1명당의 최소 면적으로 제공된다. 또한, 비상재해 대비시설에 관한 기준에서는 어린이집이 건물 1층인 경우와 4층과 5층인 경우로 구분하여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기준들이 제시되고 있으며, 또 영유아 보육시설에 그 권한이 일임되었다. 이러한 규정은 확실적인 시설의 모습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보육시설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제시되었다.

#### 2) 건축계획상의 각론

앞선 어린이집 및 놀이터의 설치기준과는 다르게, 건축

Table 4. Facility conditions of kindergarten, nursery schools, day care y schools, day care  
(유치원, 유아원, 보육시설의 시설 조건)

구분	유치원	유아원	보육시설
시설 규모	- 초등학교와 같이 원사부지, 운동장, 테라스, 사육, 재배 등에 필요한 면적의 합계 - 원사 1학급:180㎡ - 원사 2학급:320+100(학급수-3)㎡	- 유희실:반당 1실, 1실당 유아전용 면적은 최소66㎡ 이상 (1.65㎡/인) - 유원장:99㎡이상 원아 1인당 3.3㎡ 이상, 1개반 초과마다 50㎡가산, 유희실과 겸용 가능 - 화장실:소변기 반당 남녀 각 1개 이상(유아용), 대변기 반당 1개 이상(유아용)	- 부지면적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유희장은 유아 1인당 3.3㎡이상 - 바닥 연면적에 대한 규정은 없음
공간 구성 및 각실 면적 규모	- 보통교실:학급당 1실 - 실면적 66㎡ (20평) 이상: 40명 이하 - 50㎡이상:30명 이하 수용 - 유희실 1실면적: 66㎡(20평)이상 - 원장실, 사무실, 창고는 권장시설	- 보육정원:학급당 1실 - 실면적 66㎡ (20평) 이상: 40명 이하 - 50㎡이상:30명 이하 수용 - 유희실 1실면적: 66㎡(20평)이상 - 원장실, 사무실, 창고는 권장시설	- 영유아 1인당 4.29㎡ - 보육실(거실, 유희실, 포복실): 2.64㎡/인 - 사무실(가정교육 및 30인 미만 제외) - 양호실:가정보육 및 30인 미만 제외)
옥외 공간	- 1개반:150㎡이상 - 1개반 초과마다 50㎡ 가산 - 유희실로 대체 가능	- 1개반:37㎡이상 - 영아 1인당 2.5㎡ 이상	- 영유아 2.5㎡/인 - 모래밭 및 놀이 시설 3종 이상 - 지역 특수성에 따라 옥내놀이터 또는 인근 놀이터 활용 가능

※ 건축계획, 이정덕 외, 문운당

Table 5. Required of 20 people space area  
(20명 기준의 공간 면적 요구)

구분 (단위 :m <sup>2</sup> )	일반 학습	블록 놀이	조작 놀이	읽기, 듣기	소꿉 놀이	그림 그리 기	교사 실	화장 실	부가 창고
최소	13.5	4.5	9.0	조작 놀이 공간에 포함	9.0	9.0	4.1	3.6	2.1
최적	18.0	6.7	13.5		13.5	13.5	4.1	4.5	9.0

※ 건축계획 설계론, 김창언. 김종환. 김진원, 서우 출판

계획상의 각론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개개요소와 계획 및 설계의 완성이 가능하도록 하는 건축계획상의 각론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며, 유치원, 유아원, 보육시설로 구분하여 각각 시설규모, 공간구성 및 각 실의 면적규모, 옥외공간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유치원의 시설 조건은 유아원, 보육시설의 규모 조건과는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학급당 혹은 기준 면적을 제공하고 있으며, 초과 시 추가 면적의 기준까지 제시하고 있다.

보육원과 유아원의 건축계획상 각론은 앞선 건축법의 기준과 같이 영유아 1인당의 최소 면적으로 규모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보육시설의 경우는 보육실, 사무실, 양호실 등의 명확한 실의 구분으로 기준과 옥외공간의 구성

요소 또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교사 1명이 교육 및 통제하는데 적합한 인원을 1학급 당 20명으로 보고, 20명 기준의 요구 공간 면적을 최소 면적과 최적 면적으로 제시하였다.

#### 4. 유치원 교육과정 변화에 따른 시설변화요구

##### 4.1 유치원 교육과정의 변화

유치원 교육과정에 대한 검토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만 0~5세의 영유아에게 국가수준에서 제공하는 보편적이고 공통적인 보육의 목표와 내용을 제시한 표준보육과정<sup>1)</sup> 내 3~5세의 교육과정을 다룬다.

3~5세의 교육과정은 1969년 2월에 제 1차 건축법 유치원 교육과정이 제정된 이후로 5년에서 길게는 10년 간격으로 개정되어 왔다. 1차부터 7차 교육과정까지 유치원 교육과정으로써 개정된 이후, 2011년부터는 유치원 교육과정이 아닌 누리과정으로 명칭을 개정하고 2011년 누리과정 1차 개정과 2012년 누리과정 2차 개정이 이루어져 왔다.

유치원의 교육과정이 처음 제정된 것은 1949년 교육법이 공포됨과 함께 60년대에 들어서면서 유아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그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유치원

Table 6. Characterized by each revision of the kindergarten curriculum (유치원 교육과정의 각 개정별 특징)

개정 시기	교육 일수와 시간	각 교육의 구분 영역	사회적 배경에 따른 특징
제 1차 1969.02.	- 연간 200일 이상 - 하루 교육 3시간 기준	- 건강/사회/자연/언어/예능	- 유아의 바람직한 성장 발달을 조성하는 유치원 교육의 특수한 목적과 기능을 우선시.
제 2차 1979.03.	- 연간 200일 - 주당 교육 18~24시간 - 하루 교육 3~4시간 기준	- 사회·정서 발달 영역/인지 발달 영역/ 언어발달 영역/신체발달 및 건강영역	- 근대화 성취, 평화적 국토 통일, 민족 중흥 사명 완수를 위한 국민적 자질 함양, 인간교육 강화, 지식 및 기술 교육의 쇄신을 우선시.
제 3차 1981.12.	- 연간 180일 - 하루 교육 3~4시간 기준	- 신체발달영역/정서발달영역/언어발달 영역/인지발달영역/사회성발달영역	- 민주주의를 토착화하고, 민주, 복지, 정의 사회의 건설에 적극적으로 이바지 할 수 있는 자주적이고 창의적인 국민을 길러내는 것을 우선시.
제 4차 1987.06.	- 연간 180일 - 하루 교육 3시간 기준	- 신체발달영역/언어발달영역/인지발달 영역/정서발달영역/사회성발달영역	- 지식의 팽창과 과학의 발달에서 오는 고도 산업화, 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국제 관계에 주체적으로 대응하는 자주적 의식을 우선시.
제 5차 1992.09.	- 연간 180일 - 하루 교육 3시간 기준	- 건강생활/사회생활/표현생활/언어생활/ 탐구생활(수준별 영역 제시)	- 기본 생활 교육을 강조하며, 유아의 요구와 흥미, 개별성을 존중하며 놀이 중심의 교육을 우선시.
제 6차 1998.06.	- 연간 180일 - 하루 교육 3시간 기준	- 건강생활/사회생활/표현생활/언어생활/ 탐구생활(수준별학습 제안하되, 적정선 제시)	- 정보화, 세계화 사회에 맞서 사회적 변화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강화하는 교육을 우선시.
제 7차 2007.12.	- 연간 180일 - 하루 교육 3시간 기준	- 건강생활/사회생활/표현생활/언어생활/ 탐구생활	- 21세기 지식 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한국인 육성'교육을 우선시.
누리 1차 2011.09.	- 연간 180일 - 하루 교육 3시간 기준	- 5세:신체운동.건강/의사소통/사회관계/ 예술경험/자연탐구 - 3-4세:건강생활/사회생활/표현생활/ 언어생활/탐구생활	- 국가 수준의 공통성과 지역, 유치원,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교육을 우선시.
누리 2차 2012.07.	- 하루 3~5시간 기준	- 신체운동.건강/의사소통/사회관계/ 예술경험/자연탐구(각 나이대별로 구분 -3세,4세,5세)	- 유아의 심신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도와 민주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교육을 우선시.

1) 중앙보육정보센터,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Table 7. Facility Requirements in Infants related Laws and Kindergarten Curriculum  
(영유아 관련 법령과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시설변화 요구 사항)

구분	법령명칭/개정일	개정 내용	시설 변화 요구 사항
영유아 관련 법령	영유아보육법령/2011.06.07	- '보육시설'의 명칭을 '어린이집'으로 개정	- 유치원 교육과정이 누리과정으로 개정되는 시기와 맞물려 모든 시설은 0~5세까지의 아이들을 위한 어린이집으로서 명칭 개정이 필요.
	영유아보육법령/2011.08.04	-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의 원활함에 도움 - 영유아는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받지 않고 보육되어야 함. - 어린이집의 종류 개정.(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 단체인 어린이집 신설)	- 사회복지관련 개정 사항이 다량 제시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하며, 원아간, 보육교사의 차별대우를 방지하기 위한 소통의 공간이 필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1996.01.06	- 입지조건, 시설 규모(국.공립보육시설 또는 직장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구조 및 설비(보육실, 조리실, 목욕실, 화장실, 놀이터, 급배수 시설, 비상재해 대비시설)	- 별도 첨부자료에서 제공한 보육시설의 시설 기준에 맞게 계획할 것을 권장.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2006.04.13	- 입지조건, 보육시설의 증가에 따른 규모 산정, 구조 및 설비기준 제시, 장애아 배려 기준.	- 장애아 관련한 배려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원아간 차별 없는 공간 계획이 필요. - 엘리베이터 설치, 점자블럭과 휠체어 통행 가능한 유효폭 제공.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2011.12.08	- 입지조건 명확성,	- 어린이집은 위험시설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게 계획.
	유아교육법령/2012.03.21	- 방과 후 과정의 보급력 개정.	- 종일반 혹은 방과 후 과정의 원아를 위한 개별 공간의 마련이 필요.
교육과정	제 2차 교육과정/1979.03.	- 사회, 정서 발달 영역/인지 발달 영역/언어발달 영역/신체발달 및 건강영역	- 세분화 된 각 영역에 맞는 공간적 세분화 또한 필요.
	제 5차 교육과정/1992.09.	- 건강생활/사회생활/표현생활/언어생활/탐구생활(수준별 영역 제시)	- 제 5차 교육과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원아간 수준별 영역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맞는 수준별 학습 공간의 계획이 필요.
	누리 1차 교육과정/2011.09.	- 5세:신체운동.건강/의사소통/사회관계/예술경험/자연탐구 - 3-4세:건강생활/사회생활/표현생활/언어생활/탐구생활	- 3~4세, 5세의 연령대로 구분하여 교육과정을 시행함에 따라 연령대별 보육 공간의 계획이 필요.
	누리 2차 교육과정/2012.07.	- 신체운동.건강/의사소통/사회관계/예술경험/자연탐구(각 나이대별로 구분-3세,4세,5세)	- 누리 1차 교육과정과는 달리 3세, 4세, 5세의 각각 연령대로 구분됨에 따라 각 연령대별 공간이 필요.

들을 재정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1969년 2월에 제 1차 교육과정, 1979년 3월에 제 2차 교육과정, 1981년 12월에 제 3차 교육과정, 1987년 6월에 제 4차 교육과정, 1992년 9월에 제 5차 교육과정, 1998년 6월에 제 6차 교육과정, 2007년 12월에 제 7차 교육과정으로 개정되었다.

2011년 개정 당시 명칭의 변경이 있었던 이유는 어린이집의 '표준보육과정'과 유치원의 '유아교육과정'을 '만 5세 공통과정'으로 보육 및 교육 과정을 통합하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모든 영유아에게 동일한 공통과정을 제공하고 보육 및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이었다. 이에 따라 2011년 9월에 제 1차 누리과정, 2012년 7월에 제 2차 누리과정으로 개정되었다.

이러한 교육과정의 개정 변천사는 사회적 성향 변화에 따르는 교육과정 내 부적절사항을 개선하고, 교육과정과 관련된 유치원 내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적용함으로써 유치원 교육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 4.2 1차~7차 교육과정 및 누리과정 변화

교육과정의 시기별 개정 특징을 살펴보면 당시의 사회상을 적극 반영하고 있는데, 제 1차 교육과정 당시의 사회상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바람직한 성장 발달을 조성하는 유치원 교육의 특수한 목적과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에 목표를 두었다.<sup>2)</sup>

제 2차 교육과정과 제 3차 교육과정 당시의 사회상은 민주주의 사회 구현과 강력한 국력을 배양하는 데 총력을 다 하여 개인의 발전과 국가의 육성과의 조화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것에 목표를 두었으며, 제 4차, 제 5차와 제 6차, 제 7차 교육과정 내에서는 지식의 팽창과 과학의 발달에 순응하는 산업화 및 정보화 시대에 대응한 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교육의 바탕으로 개정하였다.

이후 제 1차 누리과정에서는 사회적 배경에 맞물려 국가 수준에 맞는 교육과정을 추구하되, 유아 개인 수준과 지역 및 유치원의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 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제 2차 누리과정에서는 유아의

2) 유치원 교육과정, 문교부, 1969.02.19

건강과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도와 민주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 4.3 유치원 교육과정 변화에 따른 시설 변화 요구 사항

교육과정의 변천과정에서 유아 보육시설은 효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다양한 유아 보육시설을 요구하게 되었다. 유치원 교육과정은 제 1차~제 7차 교육과정과 누리과정 1차~2차까지 총 8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제 1차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유아의 성장과 발달을 조성하는 공간을 요하는 일반적 요구사항이었다면, 제 2차~제 7차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신체발달, 정서발달, 언어발달, 인지발달, 사회성발달 등으로 영역을 구분하여 개정됨에 따라 각 영역에 맞는 새로운 공간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 누리과정에서부터는 각 연령대별로 필요한 교육의 영역을 구분함으로써 보다 더 다양한 공간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렇듯 새롭게 생겨나는 각 교육의 영역과 사회적 배경에 따른 개정사항은 시설 및 설비의 요구를 필요로 하며, 유아 보육시설의 취학률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 교육과정에 알맞은 기반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 1) 교육 구분 영역에 따른 변화 요구

제 1차 교육과정은 단순한 건강, 사회, 자연, 언어, 예능의 영역으로 교육을 구분 지었고, 이후 제 2차 교육과정에서 부터는 신체발달, 언어발달, 인지발달, 정서발달, 사회성 발달로 세분화 하여 교육과정을 개정하였다.

제 5차 교육과정과 제 6차 교육과정에서는 적정선을 제시한 수준별 영역을 제시하기 시작하였으나, 이후 제 7차 교육과정 개정에서 삭제되었다.

제 1차 누리과정에서부터는 본격적으로 3~4세와 5세의 나이대별로 맞는 교육과정으로 구분하여 개정되었고, 제 2

차 누리과정에서는 3세, 4세, 5세로 더욱 세분화 하여 개정되었다. 이러한 개정의 변화는 교육의 세분화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교육과정의 변화에 맞추어 그에 알맞은 공간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각 영역별에 알맞은 공간을 제시하면, 신체운동 및 건강 영역에 알맞은 실내·외 놀이터, 체육관 등과, 의사소통, 사회관계 영역에 알맞은 적절한 범위의 놀이 공간, 마당 등이 필요하며, 예술경험 영역에 맞는 미술실, 음악실, 조소실 등이 필요하다. 또한 자연탐구 영역에 맞는 잔디밭, 텃밭, 비닐하우스, 연못 등의 자연공간이 필요하다.

#### 2) 교육일수 및 사회적 배경에 따른 변화 요구

앞서 살펴보았던 Table 1. 유치원수, 원아 수, 취학률의 변화 양상에서도 나타나듯이, 해를 거듭할수록 수치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추세의 원인은 정부의 적극적인 복지 지원 정책의 변화도 있지만, 맞벌이 부부의 수치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영유아 보육시설의 역할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다.

제 1차~제 3차 교육과정을 제외하고, 제 4차 교육과정부터는 연간 180일을 교육 일수의 기준으로 정하고 하루의 교육을 3시간 기준으로 정한다. 그러나 제 2차 누리과정부터는 교육 시간을 하루 3시간~5시간을 기준으로 개정하였다. 또한, 제 2차 누리과정에서는 본격적으로 유아의 심신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배경을 포함하여 개정하였다.

이처럼 각 나이대별로 구분한 각 교육 영역 구분에 교육 시간 기준을 조합하여 교육 시간, 교육의 영역 구분, 사회적 배경의 교육과정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의 도입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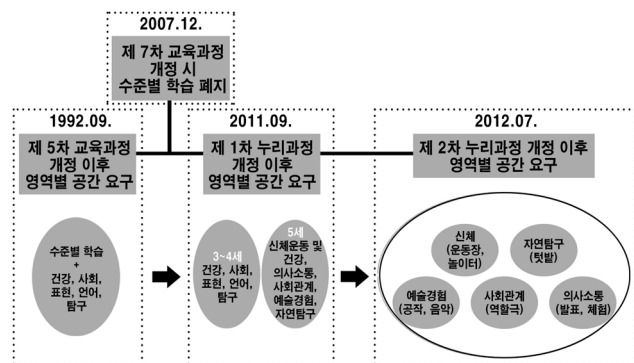


Table 8. Requirements Space Variation according to Education Sector (교육 영역 구분에 따른 공간 변화 요구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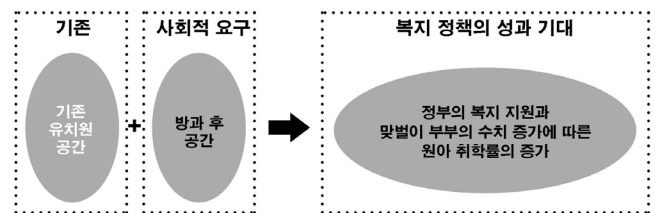


Table 9. Requirements Space Variation according to Training days and Social Background (교육일수 및 사회적 배경에 따른 공간 변화 요구 사항)

### 4.4 영유아 안전사고에 대응하는 시설변화 요구 사항

영유아의 사고력과 행동은 예측이 불가능하며 이러한 영유아의 행동 흐름에는 반드시 안전사고가 존재한다. 또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안전사고의 유형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영유아의 사고 피해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난다.

특히 유아 보육시설은 미성숙한 영유아들이 집단을 이루고 있는 공간으로서 하루 활동시간 대부분을 유아 보육 시설 내 학습 및 놀이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영유아는 상대적으로 자기 보호능력이 부족하여 매년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적절한 공간의 제시 마련이 필요하다.<sup>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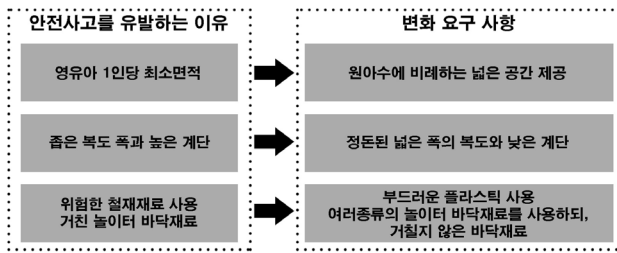


Table 10. Requirement Space Variation correspondent Infants Accident (영유아 안전사고에 대응하는 공간 변화 요구 사항)

Table 11. place of Kindergarten kid's accident (영유아 안전사고의 장소 유형)

실내		실외	
장소	수치(%)	장소	수치(%)
실내놀이실 (보육실, 교실)	2,210(72.5)	실외 놀이터	508(64.1)
기타(교사실 등)	260(8.5)	견학 중	197(24.9)
복도 및 계단	227(7.4)	기타	38(4.8)
대근육활동실 (실내놀이실)	169(5.5)	복도 및 계단	23(2.9)
화장실	106(3.5)	길(등하원 및 이동중)	22(2.8)
식당	44(1.4)	대근육활동실	4(0.5)
길(등하원 및 이동중)	23(0.8)		
조리실 및 교재교구실	8(0.3)		
현관	1(0.0)		
계	3,048(100)	계	792(100)

※ 2010년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통계자료.

1) 실내 공간

영유아의 안전사고 발생 장소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곳은 바로 보육실 및 교실이 있는 실내놀이실이다. 실내사고 79.4% 중 72.5%라는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실내 공간의 보육실 및 교실은 영유아가 보육시설 내에서 가장 오랜 시간 사용하며 활동하는 곳이며, 가장 활용률이

3) 박임호, 정진주, 학교안전사고 실태분석을 통한 건축계획적 시설기준 개선에 관한 연구 -대전지역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한국교육시설학회 논문집 2012년 3월호, p21

높은 곳이다.

실내 공간에는 놀이기구, 교육물품 등 많은 물체들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물체 간 부딪힘의 비율이 전체 사고 유형 중 37%를 차지한다. 또한 원아 수에 비해 좁은 공간은 원아 간 부딪힘과 넘어짐을 유발하는데 전체 사고 유형 중 33%를 차지한다. 이러한 비율로 볼 때, 실내 공간은 원아 수에 비례하도록 넓은 공간을 제시해주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2) 복도 및 계단

영유아의 안전사고 장소가 실외보다 실내에서의 사고 발생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실내공간의 영향이기도 하지만 영유아의 왕래가 가장 많은 복도와 계단에서의 복잡함 때문이기도 하다. 실내 사고 79.4%에서 복도 및 계단이 7.4%를 차지하는 만큼 사고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영유아 이동에 문제가 없도록 복도의 폭을 조절하고, 복도에 자리하고 있는 필요 물품은 최대한으로 줄여 복도 사용 공간의 면적을 넓혀주어야 한다. 또한 계단은 영유아가 오르내리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계단참과 폭을 적절히 조절하여 계획해야 한다.

3) 영유아 보육시설 내 놀이터

실외에서의 사고 발생 비율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곳은 64.1%의 실외놀이터이다. 놀이터 내의 놀이기구와 놀이터 바닥은 찢어짐, 추락, 끼임, 찰과상, 골절, 배임 등을 유발하기도 한다. 놀이터 내에 위치하는 놀이기구는 안전성 및 적정성 검사를 통과한 제품으로 배치하고, 놀이터 내의 바닥은 영유아의 상상력을 유도하도록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하되, 인체에 무해한 재료를 사용하고 거친 재료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6. 결론 및 제언

이와 같이 유치원 교육과정의 변천과 수반된 영유아 관련 법령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영유아 보육시설 설치 기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첫째, 놀이터 규모의 계획 기준의 증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어린이집 설치기준에서 놀이터를 제외한 시설의 면적 산정 시 영유아 1명당 4.29㎡, 놀이터의 기준은 1명당 3.5㎡라고 규정하고 있다. 영유아는 활동 범위가 예측 불가능 한 시기이며, 특히 야외활동 시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때문에 놀이터의 경우는 실내 교육공간



보다 면적이 넓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보편적이므로 영유아 1인당 교육 공간 면적의 약 2배의 규모로 계획 기준을 산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러한 영유아의 활동 범위에 방해가 되지 않는 넓은 면적을 제공하는 것은 안전 사고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되기도 한다.

둘째, 현 유치원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의 개정에 맞는 각 영역별 공간 조닝을 통하여, 확실적인 교실과 보육실이 아닌 신체, 자연탐구, 예술경험, 사회관계, 의사소통의 영유아 발달이 골고루 이루어지도록 하는 각 영역의 특징을 살린 다양한 공간 제시가 필요하다. 이러한 공간 조닝이 유치원 내 다소 넓은 면적을 필요로 하는 것은 사실이나, 영유아의 올바른 발달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간이므로 영유아 보육법 내 각 영역별 공간의 면적 제시가 필요하다.

셋째, 사회복지 및 장애아 관련한 법령의 개선이 시급하다. 현재 영유아보육법의 시행규칙에서 장애아 관련 설치 기준을 제공하고 있지만,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사회복지 관련 법령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에 보육수당 혹은 지원 금액의 조절이 필요하며 영유아 시설 내 설치 기준의 추가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처럼 현재 거론되고 있는 영유아 관련 법령이나 유치원 교육과정에 변화와 새로운 교육 영역과 방식의 변화로 인해 요구되는 권장 시설 혹은 새로운 교실에 대한 신설 등과 같은 개정안도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기준안의 개정은, 앞으로의 새로운 교육과정에 대응하는 다양한 교육과 영유아 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활용 뿐 만 아니라 국가 수준에서의 영유아 보육시설 재정의 경제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 영유아 관련 법령 및 유치원 교육과정에서 위와 같은 적정 면적 제공과 장애아 관련 법령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와 관련해 영유아 시설에 대한 적정 계획기준의 연구 등이 선행되어 실제적인 법령의 개정으로 연장되길 기대한다.

## References

1. Kindergarten Curriculum, <http://www.moe.go.kr/main.do>
2. National Legal Information Center, <http://www.law.go.kr/main.html>
3. National Curriculum Information Center, <http://www.ncic.re.kr/>
4. Childcare center safety&insurance association, <http://www.csia.or.kr/sais/notice/DataSl.jsp>
5. Central Childcare Information Center, <http://central.childc>

are.go.kr

6. Park, Im-Ho, Jung, Jin-Ju, Cheongju University, 'Study on Improvement of Facility Criteria of Architecture Planning by analysing the State of Safety Accident in Schools- Focused on the Primary Schools in Daejeon City-',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Educational Facilities, 2012.03.
7. Noh, Ran, Yoon, Sung-Hoon, Jung, Jin-Ju, Cheongju University, 'A study of the revisions of the school facility and equipment standards with the changes in education curriculum and legislations of school facilities and equipment',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Educational Facilities, 2011.09.
8. Yoon, Do-Geun, Mun-un-dang, Architecture planning, 2008.09.
9. Lee, Jung-Deok, Mun-un-dang, Architecture planning, 2010.06.

접수 2013. 9. 30  
1차 심사완료 2013. 11. 1  
게재확정 2013. 11. 20